

목차

목차	2
민원서식	4
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	4
첨부파일(1)	4



민원사무처리

민원서식

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

작성일 2020.09.15 10:46

등록자 한설희

조회수 218

첨부파일(1) 09_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.hwp 50 hit/ 74.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

1. 사무안내

상속, 양도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영업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(영업소의 명칭.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음))

- 2. 신청대상자: 식품영업지위를 승계한 자
- 3. 신청방법: 방문
- 4. 관련법규
-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
- 5. 수수료: 9,300원
- 6. 구비서류:
- ○영업허가증,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
- ○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- 양도의 경우: 양도 ·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-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- ○위생교육 수료증(양수인)
- ○건강진단결과서(양수인)
- ○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
- (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)
- 화재배상책임보험, 소방안전교육이수증(다중이용업소 해당)
- 7. 처리기간 및 제출처:
- 영업신고: 즉시(3시간이내)
- 영업허가 및 등록: 3일 / 민원봉사과(☎430-3425)

목록

 $\label{eq:copyright} \text{COPYRIGHT} @ \text{GANGJIN-GUN.ALL RIGHT} \\ \text{RESERVED.}$

GANGJIN **Web Contents**

